|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수출화물 및 용역**  **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방법》 반포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2년 제24호  납세인의 수출화물과 용역에 대한 퇴세(면세), 면세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 관리를 진일보 규범화하며, 국가세무총국의 수출화물과 용역의 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규정에 대한 진일보 정리, 개선을 위하여 《수출하는 화물과 용역의 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방법》을 제정한바, 이에 발포한다.  첨부문건 :  1. 수출 퇴(면)세 자격승인 신청표  2. 수출 퇴(면)세 자격승인 변경 신청표  3. 수출 퇴(면)세 자격승인 말소 신청표  4. 면저퇴세(免抵退税) 신고 집계표  5. 면저퇴세(免抵退税) 신고 집계부속표  6. 면저퇴세(免抵退税) 신고자료 현황표  7. 생산기업 수출화물의 세금 면(免), 저(抵), 퇴(退)세 신고 명세표  8. 생산기업 수출 비자가생산화물 소비세환급 신청표  9. 생산기업 진료가공 등기 신청표  10. 생산기업 진료가공 등기변경 신청표  11. 생산기업 진료가공 수입원자재 신고 명세표  12. 생산기업 진료가공 수출화물의 보세수입원자재 공제 신청표  13. 생산기업 진료가공 수책등기 핵소신청표  14. 생산기업 수출화물의 국내 면세 원자재 공제 신청표  15. 대외무역기업의 수출퇴세 집계신고표  16. 대외무역기업의 수출퇴세 입하 신고명세표  17. 대외무역기업의 수출퇴세 수출 신고명세표  18. 자가사용화물 구매의 퇴세 신고표  19. 기사용한 수출설비 퇴세 신고표  20. 수출 사용의 설비감가상각현황 확인표  21. 퇴세(면세) 화물, 지표대조표  22. 면세 수출화물 및 용역 명세표  23. 수출궐련 면세구매 허가증명 신청표  24. 수출궐련 면세구매 허가증명  25. 수출궐련 기 면세증명 신청표  26. 수출궐련 기 면세증명  27. 수출궐련 면세핵소 신고표  28. 내료가공 면세증명 신청표  29. 내료가공 면세증명  30. 내료가공 수출화물 면세증명 핵소 신청표  31. 대리수출화물 증명  32. 대리수출화물 증명 신청표  33. 대리수입화물 증명 신청표  34. 수출화물 반송 보충세금(미퇴세)증명  35. 반송 보충세금 (미퇴세) 증명 신청표  36.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재발급 신청표  37. 수출 외환수취 핵소 증명서 재발급 신청표  38. 수출퇴세 입하 분할신고서  39. 수출화물 내수판매 전환 증명서 신청표  40. 입찰증명 통지서  41. 입찰프로젝트의 환급불가 화물 명세서  42. 수출퇴세 관련증명서 재발급에 관한 신청  43. 면세 궐련의 지정 수출항구  44. 폐지문건목록  첨부문건 다운로드: 첨부문건[.zip](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11985939.files/n11985960.zip)  국가세무총국  2012년 6월 14일  **수출화물 및 용역 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방법**  Ⅰ.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 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행조례》, 그 실시세칙 및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수출하는 화물과 용역의 증치세 및 소비세 정책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Ⅱ. 수출기업 및 기타단위는 수출화물, 수출로 간주되는 화물, 대외에 제공하는 가공수리정비 용역(이하 ‘수출 화물 및 용역’으로 통칭)의 증치세, 소비세 퇴(면)세, 면세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수출기업과 수출 화물 및 용역의 범위, 퇴(면)세 및 면세의 적용범위와 계산방법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수출하는 화물 증치세 및 소비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2] 39호)에 따라 집행한다.  Ⅲ. 수출 퇴(면)세 자격승인  [1] 수출기업은 대외무역 경영자 비안등기 또는 첫 번째 위탁수출협의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수출 퇴(면)세 자격승인 신청표》(첨부문건1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 아래자료를 주관 세무기관에 제공하여 수출 퇴(면)세 자격승인을 처리해야 한다.  1. 비안등기전용장 날인된 《대외무역 경영자 비안등기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2.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 수하인/선적인의 세관신고 등기등록증서  3. 은행계좌개설 허가증  4. 비안등기 미처리로 인해 위탁수출업무가 발생한 생산기업이 대리위탁수출협의를 제공한 경우, 제1, 2항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음  5. 주관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자료  [2] 기타단위는 수출 화물 및 용역 업무 발생 전, 《수출 퇴(면)세 자격승인 신청표》를 작성하여 제출, 은행계좌개설 허가증 및 주관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자료를 제공하여 주관 세무기관에서 수출 퇴(면)세 자격승인을 처리해야 한다.  [3] 수출기업 및 기타단위는 수출 퇴(면)세 자격승인 받기 전 발생한 수출 화물 및 용역에 대해서 수출 퇴(면)세 자격승인 처리 후 규정된 퇴(면)세 신고기한 내 규정에 따라 증치세 퇴(면)세 또는 면세 및 소비세 퇴(면)세 또는 면세를 받을 수 있다.  [4] 수출기업 및 기타단위의 수출 퇴(면)세 자격승인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내, 《수출 퇴(면)세 자격승인 변경 신청표》(첨부문건2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 관련 자료를 주관 세무기관에 제공하여 변경된 수출 퇴(면)세 자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5] 세무등기 말소가 필요한 수출기업 및 기타단위는 《수출 퇴(면)세 자격승인 말소 신청표》(첨부문건3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 주관 세무기관에 수출 퇴(면)세 자격 말소 신청 한 이후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 말소 처리를 해야 한다.  수출기업 및 기타단위는 승인말소 신청 전, 수출 퇴(면)세를 결산해야 한다. 승인 말소 후, 수출기업 및 기타단위는 수출 퇴(면)세를 재신고 할 수 없다.  Ⅳ. 생산기업 수출화물의 면저퇴세(免抵退税) 신고  [1] 신고절차 및 기한  기업의 당월 수출화물은 익월 증치세 납세 신고기한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서 증치세 납세 신고, 면세, 환급세금 관련 신고 및 소비세 면제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기업은 화물 통관 후 수출일(수출화물 통관목록<수출퇴세전용>의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함, 이하 동일) 익월부터 그 다음 연도 4월 30일 전의 각 증치세 납세 신고기한 내에 관련증빙을 준비하여 주관 세무기관에 수출화물 증치세 면저퇴세 및 소비세 환급을 신고 처리해야 한다. 기한초과 시, 기업은 면저퇴세를 신고할 수 없다.  [2] 신고자료  1. 기업은 주관 세무기관에 증치세 납세신고 시, 납세신고 규정에 따른 관련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주관 세무기관이 인정한 《면저퇴세 신고 집계표》(첨부문건4 참조)  (2) 주관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한 기타 자료  2. 기업은 주관 세무기관에 증치세 면저퇴세 처리신고 시,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면저퇴세 신고 집계부속표》 및 해당 부속명세표(첨부문건5 참조)  (2) 《면저퇴세 신고자료 현황표》(첨부문건6 참조)  (3) 《생산기업 수출화물의 면저퇴세 신고 명세표》(첨부문건7 참조)  (4) 수출화물의 퇴(면)세를 정식 신고한 전자데이터  (5) 아래의 원시증빙  ①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수출퇴세전용, 이하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것은 모두 이 페이지임) (보세구 내의 수출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보세구 출경(出境)화물 비안명세서를 제공할 수 있고, “출경화물 비안명세서”로 통칭, 이하 동일)  ② 수출 외화수취 핵소단(核销单) (수출퇴세 페이지, 이하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것은 모두 이 페이지임) (장기 외환결제의 경우 장기 외환결제 비안 증명서를 제공, 보세구 내의 수출기업은 외환결제 계산서를 제공, 국제무역의 인민폐 결산업무, 수출퇴세 시범업무에서 페이퍼 수출 외화수취 핵소단 제공을 면제하는 지역과 화물무역 외환관리제도개혁 시범업무 지역의 기업은 제공을 면제한다. 이하 동일)  ③ 수출인보이스  ④ 위탁수출화물은 양수인의 주관 세무기관이 서명 발급한 수출대리화물증명 및 대리수출협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⑤ 주관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자료  3. 생산기업이 수출하여 자가생산으로 간주되는 화물 및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비자가생산화물이 소비세 과세소비품(이하 “과세소비품”)에 포함되는 경우, 아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생산기업 수출 비자가생산화물 소비세환급 신청표》(첨부문건8 참조)  (2) 소비세전용납부서 또는 분할단(分割单, 납부서 뒷 페이지), 세관 수입소비세 전용납부서, 위탁가공회수 과세소비품의 원천징수 납부증빙 원본 또는 사본  [3] 진료가공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아래 규정에 따라 수책등기, 수입원자재 신고 및 수책핵소를 처리해야 한다.  1. 기업이 진료가공무역 수책(장부) 처리 후, 원자재의 실제 수입일부터 익월(실제소모법(实耗法) 공제를 채택한 경우, 원자재의 실제 사용일부터 익월까지)의 증치세 납세신고 기한 내, 《생산기업 진료가공 등기 신청표》(첨부문건9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 정식 신고한 전자데이터 및 아래 자료를 제공하여 주관 세무기관에서 진료가공 등기수속을 처리한다.  (1) 종이수책(纸质手册) 사용기업은 진료가공 수책원본 및 사본을 제공, 전자화수책(电子化手册) 사용기업은 세관의 서명날인된 가공무역 전자 페이퍼문건을 제공해야 한다. 전자장책 (电子账册)을 이용하는 기업은 세관이 심사 후 발급한 《가공무역 네트워크 감독기업 전산장부 비안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2) 주관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자료  이중 위탁방식(생산기업이 수입, 수출 모두 수출기업에게 위탁하여 처리, 이하 동일)으로 진료가공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인 경우, 위탁인은 대리수입/수출협의 및 수탁인의 상술한 자료의 사본을 근거로 하여 주관 세무기관에서 진료가공 등기수속을 처리한다.  기처리된 진료가공 등기수속의 종이수책, 전자화수책 또는 전자장책에 기재된 가공단위, 등기된 수입원자재 총액, 등기된 수출화물 총액, 수책의 유효기간 등 항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업은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익월 증치세 납세신고기한 내 《생산기업 진료가공 등기 변경 신청표》(첨부문건10)를 작성하여 제출, 정식 신고된 전자데이터 및 세관이 심사 후 발급한 변경 후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주관 세무기관에 수책(장부)변경 수속을 신고 처리해야 한다.  2. 진료가공업무 종사기업은 원자재의 실제 수입일부터 익월(실제소모법 계산을 채택한 경우, 원자재의 실제 사용일부터 익월까지) 증치세 납세 신고기한 내에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대리수입화물증명 및 대리수입협의 등 자료를 주관 세무기관에 제공, 《생산기업 진료가공 수입원자재 신고 명세표》(첨부문건11 참조), 《생산기업 진료가공 수출화물의 보세수입원자재 공제 신청표》(첨부문건12 참조)를 작성 후 제출하여 신고해야 한다.  3. 종이수책 또는 전자화수책 이용 기업은 세관이 핵소결안통지서를 서명 발급한 날(결안일자를 기준으로 함, 이하 동일)부터 익월 증치세 납세 신고기한 내 《생산기업 진료가공 수책등기 핵소신청표》(첨부문건13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 정식 신고한 전자데이터 및 종이수책 또는 전자화수책을 제공하여 주관 세무기관에 진료가공 핵소수속 처리를 신청한다. 전자장책 이용 기업은 1회 핵소수속을 완료한 후 세관이 핵소결안통지서를 서명 발급한 날로부터, 익월 증치세 납세 신고기한 내 《생산기업 진료가공 수책등기 핵소신청표》를 작성하여 제출, 정식 신고한 전자데이터를 제공하여 주관 세무기관에 진료가공 핵소 수속 처리를 신청해야 한다.  기업은 핵소한 후 면세된 수입원자재금액에 따라 당기 증치세 납세신고 및 면저퇴세 신고를 조정 계산해야 한다.  [4] 매입세액이 미계상된 국내 면세 가공수출화물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구매한 경우, 기업은 가공수출화물의 면세 원자재를 단독 정산해야 하고, 면세 원자재 구매일부터 익월 증치세 납세 신고기한 내, 《생산기업 수출화물의 국내 면세 원자재 공제 신청표》(첨부문건14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 정식 신고한 전자데이터를 제공하여 주관 세무기관에서 신고수속을 처리한다.  [5] 면저퇴세 신고 데이터의 조정  전기신고오류는 당기에 조정한다. 당기에 음수(-)를 사용하여 전기오류신고데이터 전액을 상쇄시키고, 전액을 재신고 한다.  금년도에 반송이 발생한 경우, 당기에 음수(-)를 사용하여 기존 면저퇴세 신고데이터를 상쇄시킨다. 다음 연도에 반송이 발생할 경우, 기존 면저퇴세 항목을 전액 추납하고 현행 회계제도의 관련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금년도에 면저퇴세를 기신고한 경우, 면세방법 또는 세금징수방법을 실시, 당기에 음수(-)를 사용하여 기존 면저퇴세 신고데이터를 상쇄해야 한다. 다음 연도에 면저퇴세를 기신고한 경우 면세 또는 세금징수방법을 실시하여, 음수(-)로 상쇄할 필요 없이 면저퇴세 전액을 추납해야 하며, 현행 회계제도의 관련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Ⅴ. 대외무역기업의 수출화물 면세 및 환급 신고  [1] 신고절차 및 기한  기업이 당월 수출한 화물은 익월 증치세 납세 신고기한 내, 주관 세무기관에 증치세 납세신고를 처리해야 하며 퇴(면)세정책에 적용되는 수출화물 판매액을 증치세 납세신고표의 “화물판매액 면세”란에 작성하여 보고한다.  기업은 화물 통관 후 수출일 익월부터 다음연도 4월 30일 전까지의 증치세 납세 신고기한 내, 관련증빙 제출하여 주관 세무기관에서 수출화물 증치세, 소비세 면세, 환급 신고 처리를 해야 한다. 주관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기업은 증치세 납세 신고기한 외에도 기타 일자에 면세, 환급 신고처리 할 수 있다. 기한 초과 시, 기업은 면세,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2] 신고자료  1. 《대외무역기업의 수출퇴세 집계 신고표》(첨부문건15 참조)  2. 《대외무역기업의 수출퇴세 입하 신고명세표》(첨부문건16 참조)  3. 《대외무역기업의 수출퇴세 수출 신고명세표》(첨부문건17 참조)  4. 수출화물 퇴(면)세 정식 신고한 전자데이터  5. 아래의 원시증빙  (1) 수출화물통관서  (2)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공제페이지), 수출퇴세된 분할매입신고서,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세관의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를 제공할 경우, 수입화물 통관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이하 동일)  (3) 수출 외화수취 핵소단  (4) 위탁수출한 화물인 경우, 수탁인의 주관 세무기관이 서명 발행한 대리수출화물증명 및 대리수출협의 부본을 제출해야 함  (5) 과세 소비품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세 전용납부서 또는 분할단(分割单), 세관 수입소비세 전용납부서(세관 수입소비 전용납부서를 제공할 경우, 수입화물 통관신고서도 함께 제공해야 함, 이하 동일)를 제공해야 함  (6) 주관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자료  Ⅵ. 수출기업 및 기타단위의 수출간주화물 및 대외 제공하는 가공수리정비용역에 대한 퇴(면)세 신고  통관 후 특수지역에 반입되어 특수지역 내 단위 또는 경외단위, 개인에게 판매하는 화물, 특수지역 이외의 생산기업 또는 대외무역기업의 퇴(면)세 신고는 각각 본 방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기타 수출간주화물 및 대외 제공하는 가공수리정비용역이 통관수출에 포함되는 경우 수출 통관일부터, 비통관수출에 포함되는 경우 수출세금계산서 또는 일반 영수증 발행일부터,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는 익월부터 다음연도 4월 30일전까지의 증치세 납세신고기한 내에 퇴(면)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 초과 시,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는 퇴(면)세 신고를 할 수 없다. 퇴(면)세 신고 시, 생산기업이 본 방법 제4조에 따라 신고, 대외무역기업 및 생산능력이 구비되지 않은 기타단위가 본 방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신고(제공하지 않은 수출 외화수취 핵소단, 통관하지 않고 수출 판매된 미제공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및 수출인보이스가 생산기업이 판매하여 제공한 일반세금계산서에 속하는 경우)하는 것 이외에도 아래 화물용역에 대해서 수출기업 및 기타단위는 이에 상응하는 보충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대외원조 받은 수출화물인 경우, 상무부가 대외원조 우대 대출 사용을 비준하는 회신문건(“대외원조 임무서”) 사본 또는 상무부가 대외원조 합자 합작프로젝트 기금 사용을 비준하는 회신문건(“대외원조 임무서”) 사본  [2] 대외청부공사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수출화물인 경우, 대외청부공사 계약서를 제공하고, 만일 외주에 속하는 경우, 수주 받은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퇴(면)세를 신청하며, 퇴(면)세 신청 시, 대외청부계약서 제공과 더불어 외주계약서(협의)를 제공해야 한다.  [3] 경외투자에 사용되는 수출화물인 경우, 상무부 및 그 수권단위가 해당 경외 투자를 비준하는 문건의 부본을 제공해야 한다.  [4] 세관에 통관신고를 하여 세관 감독창고에 반입된 후 세관검역구역 내 면세점에 제공하는 판매화물인 경우, 제공하는 수출화물 통관신고서는 면세품 경영기업의 통관전용장 날인을 해야 한다. 상해홍교공항, 포동공항의 세관국제검역구 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물인 경우, 제공하는 수출화물 통관신고서는 면세점 통관전용장을 날인해야 하며, 세관이 면세점 판매화물에 대한 핵소증명문건을 제공해야 한다.  [5] 판매되는 입찰전기기계제품은 아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입찰공고단위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이 서명 발행한 《입찰증명통지서》  2. 중국 입찰공고회사 도는 기타 국내 입찰공고조직이 서명 발행한 입찰증명(정본)  3. 입찰자와 중국 입찰공고회사 또는 기타 입찰공고조직이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협의)  4. 입찰자가 입찰문서의 규정 및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출하한 송화장  5. 입찰전기기계제품 사용자의 물품인수 명세서  6. 외국기업이 입찰된 후 외주를 통해 국내기업에게 공급하는 전기기계제품인 경우, 입찰기업과 체결한 외주계약서(협의)  [6] 해상석유천연가스 채굴기업에 판매하는 자가생산 해양공정구조물인 경우, 판매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7] 외국선박, 원양국선박에 판매하는 화물인 경우, 명시된 판매화물명칭, 수량, 판매금액 및 외국선박 선장, 원양국선박 선장이 서명한 수출인보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8] 생산 후 국내 및 국외 항공회사 국제항공편에 판매하는 항공식품인 경우, 아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항공회사와 체결한 식단계약서  2. 항공회사가 제공하는 식단계획표(항공편 번호, 이착륙 도시 등 내용 반드시 명기)  3. 국제항공편 승무원장이 서명한 송화명세서(항공회사 명칭, 항공편 번호 등 내용 반드시 명기)  [9] 대외에 제공하는 가공수리정비용역은 아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수리정비된 선박 이외의 기타물품인 경우, 무역방식이 “물품 수리”인 수출화물 통관신고서를 제공  2. 경외단위, 개인과 체결한 수리정비 계약서  3. 수리작업계획표(대외 수리정비 항공기 업무제공)  Ⅶ. 수출 화물 및 용역에 대한 퇴(면)세의 기타신고 요구  [1] 특수지역에 송출되는 수도/전기/가스는 수도/전기/가스를 구매한 특수지역 내의 생산기업이 퇴세 신고를 한다. 기업은 구매화물의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발행일 익월부터 다음연도 4월 30일 전까지의 각 증치세 납세신고기한 내 주관 세무기관에 퇴세를 신고해야 한다. 기한 초과 시, 기업은 퇴세 신고를 할 수 없다. 퇴세 신고 시, 《자가사용화물 구매의 퇴세 신고표》(첨부문건18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 정식 신고한 전자데이터 및 아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공제 페이지)  2. 수도, 전기, 가스비 지불한 은행정산 증빙(은행도장 날인한 사본)  [2] 보세구로 반송된 화물을 수출기업이 경외단위 및 개인에게 판매하고, 경외단위 및 개인은 해당 화물을 보세구내에 보관하는 창고기업일 때, 수출 시 창고기업이 통관수속을 처리하고, 세관이 해당 화물을 경외 발송한 후 보세구에 들어온 수출화물 통관신고서를 서명 발급하는 경우, 보세구 이외의 생산기업 및 대외무역기업은 퇴(면)세 신고 시, 각각 본 방법 제4조, 제5조에 규정된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창고기업의 출경화물비안명세서도 제공해야 한다. 퇴(면)세신고 기한을 확정하는 수출일자는 마지막 출경화물비안명세서 상의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수출기업 및 기타단위가 수출한 설비 가운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구매한 설비, 2009년 1월 1일 이후 구매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한 설비, 비증치세 납세자가 구매한 설비 및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시범업무 지역의 수출기업 및 기타단위가 시범업무 시행 이전에 구매한 설비가 매입세액 공제 미계산된 기사용설비에 포함되는 경우 모두 증치세 퇴세, 면세 방법을 시행한다.  수출기업 및 기타단위는 화물통관 수출일 익월부터 다음연도 4월 30일 전까지의 각 증치세납세 신고기한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단독으로 퇴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 초과 시, 수출기업 및 기타 단위는 퇴세신고를 할 수 없다. 퇴세신고 시, 《기사용한 수출설비 퇴세 신고표》(첨부문건19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 정식 신고한 전자데이터 및 아래 자료를 제공한다.  1.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2. 위탁수출한 화물인 경우, 수탁인의 주관 세무기관이 서명 발행한 대리수출화물증명 및 대리수출협의를 제공해야 한다.  3.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공제 페이지) 또는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세신고서  4. 수출 외화수취 핵소단  5. 《수출 사용의 설비감가상각현황 확인표》(첨부문건20 참조)  6. 주관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자료  [4] 소재성(자치구)의 국경연안 출구에서부터 인접국가까지 인민폐로 결산하는 국경지역 일반무역 또는 국경 소액무역, 은행계좌이체의 인민폐 결산 방식을 취하는 수출화물에 대하여 생산기업, 대외무역기업은 퇴(면)세 신고 시, 각각 본 방법 제4조, 제5조에 규정된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민폐로 결산한 은행기록표를 제공해야 한다. 은행기록표는 외환관리부문이 발급한 수출 외화수취 핵소단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은행기록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인민폐핵소”를 기재한 수출 외화수취 핵소단 을 제공할 수 있다.  [5] 국제무역의 인민폐 결산방식으로 수출하는 화물인 경우, 수출기업이 퇴(면)세 신고를 하고, 수출 외화수취 핵소단 은 제공할 필요 없다.  [6] 수출기업 및 기타단위가 첨부문건21에 나열된 화물의 퇴(면)세 신고 시, 신고표의 명세표 “퇴(면)세 업무유형”란에 첨부문건21에 나열된 화물과 상응하는 것에 표시한다.  Ⅷ. 퇴(면)세 원시증빙의 관련규정  [1]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공제 페이지)  수출기업 및 기타단위가 수출 화물 및 용역을 구매하여 수취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는 규정에 따라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의 승인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매입세액이 이미 공제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는 퇴(면)세 신고 시 제공할 필요 없다.  수출기업 및 기타단위가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의 영수증 페이지(发票联)와 공제 페이지(抵扣联)를 분실한 경우, 승인을 거쳐 확인 후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기장 페이지(记账联) 사본 및 판매자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이 발급한 분실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의 기세무신고 증명서에 근거하여 주관 세무기관에 퇴(면)세를 신고할 수 있다.  수출기업 및 기타기관이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공제 페이지를 분실한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승인을 거쳐 확인 후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의 영수증 페이지 사본에 근거하여 수출퇴세를 주관하는 세무기관에 퇴(면)세를 신고할 수 있다.  [2]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수출기업은 화물이 통관되어 수출된 즉시 “중국 전자항구출구 퇴세 서브시스템”에서 통관신고서 확인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수출화물의 통관신고 전산정보를 즉시 조회하고, 수출화물 통관신고 전산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즉시 중국 전자항구 또는 주관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수탁인이 대리수출하는 화물과 기타화물을 함께 통관하여 수출하는 경우, 위탁인이 퇴(면)세 신고 시, 수출화물의 통관신고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3] 수출 외화수취 핵소단  수출기업이 아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2년 내에 수출 퇴(면)세 신고 시, 수출 외화수취 핵소단 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 납세신용평가 등급이 C급 또는 D급인 경우  2. 규정된 기한 내 수출 퇴(면)세 자격승인을 미처리한 경우  3. 재무회계제도가 완비되지 않고, 평소 수출 퇴(면)세 신고 시, 수 차례 착오가 발생한 경우  4. 처음으로 수출 퇴(면)세 신고 처리하는 경우  5. 탈세, 미납세금 추납 포탈, 수출환급세금 탈취, 납세거부,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또는 농산품 구매 계산서 허위발급, 허위 발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선의적으로 허위발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취득한 경우 제외) 영수 등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수출기업이 상술한 5가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개혁, 조직개편 및 합병, 분립 등의 사유로 신규설립하여 수출 퇴(면)세 자격승인을 재처리한 경우, 또는 기존 수출기업이 상술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친 경우, 수출 퇴(면)세 신고 시, 수출 외화수취 핵소단 을 잠정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수출 퇴(면)세 신고마감일 전까지 매월 신고명세표 순서에 따라 장정하여 책으로 만든 수출회수 핵소단을 받아서 제공해야 한다.  [4] 관련 비안서류  수출기업은 수출 퇴(면)세 신고 후 15일 내에 신고하는 수출 퇴(면)세 화물의 아래 서류를 수출 퇴(면)세 신고하는 수출화물 절차에 따라 《수출화물 비안서류 목록》을 작성한다. 비안서류 보관장소를 명시하고, 주관 세무기관의 심사에 대비한다.  1. 대외무역기업의 화물 구매계약서, 생산기업의 비자가생산제품 화물 수출 구매계약서. 매매계약서 하에 체결한 보충계약서 등 포함  2. 수출화물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3. 수출화물 운수증빙(해운 선하증권, 항공 운송서, 철로 운송서, 화물 인수증, 우편 인수증 등 운송인이 발급한 화물 서류 및 수출기업이 지급하는 운송비의 국내 운송증 포함)  만일 상술한 원시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수출기업은 유사한 내용 또는 유사한 역할을 구비한 기타서류를 이용하여 서류비안을 진행할 수 있다. 별도 규정 외에, 비안서류는 수출기업이 보존하고 보관한다. 독단적으로 훼손할 수 없으며, 보존기한은 5년이다. 수출간주화물 및 대외에 제공하는 수리정비용역은 비안서류 관리를 진행하지 않는다.  IX. 수출기업과 기타단위의 수출 화물 및 용역 면세 적용 신고  [1] 특수구역 내 기업이 수출하는 특수구역 내의 화물, 또는 기타단위의 수출간주 면제정책을 적용하는 화물 용역은 수출 또는 판매 익월 증치세 납세 신고기한 내, 주관 세무기관에서 증치세, 소비세 면세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2] 기타 면세정책을 적용하는 수출 화물 및 용역은 수출기업과 기타단위가 화물용역 면세업무 발생 익월(분기에 따라 증치세 납세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 분기)에 《 면세 수출화물 및 용역 명세표》(첨부문건22 참조)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규정 전자 신고데이터를 주관 세무기관에 제공하여 면세 신고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위탁수출일 경우, 대리수출화물 증명)등 자료는 기업에 비치한다.  비수출기업의 위탁수출 화물의 경우, 위탁인이 화물용역 면세업무가 발생한 익월(분기에 따라 증치세 납세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 분기)의 증치세 납세신고 기한 내, 수탁인의 주관 세무기관이 발급한 대리수출화물 명 및 대리수출협의 부본 등 자료에 근거하여 주관 세무기관에 증치세, 소비세 면세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수출기업과 기타단위가 규정기한 내에 수출 퇴(면)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대리수출화물증명》을 신고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미 증치세 퇴(면)세를 신고하였으나 규정 기한 내에 세무기관에 증치세 퇴(면)세 증빙을 보충 제출하지 않은 등의 경우, 만약 퇴(면)세 마감기한 전에 이미 증치세 면세 정책의 시행이 확정된 경우, 수출기업 및 기타단위는 면세를 확정한 익월 증치세 납세신고 기간에 전 관(款)이 규정한 수속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에 면세를 신고한다. 이미 면세를 신고한 경우, 수출 퇴(면)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대리수출화물 증명을 신고 발급하지 않는다.  [3] 본 조 제(2)항 제 3관, 수출화물이 만약 이미 퇴(면)세 처리된 경우, 면세신고 전 대외무역기업 및 생산능력을 구비하지 않은 기타단위가 이미 환급된 세금을 추납해야 한다. 생산기업은 본 방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신고데이터를 조정하거나 기존 면저퇴세 프로젝트를 전액 추납한다.  [4] 관련 면세증명 및 면세 핵소처리  1. 국가계획 내에서 수출한 궐련(담배) 관련증명 및 면세 핵소처리  궐련 수출기업이 궐련 생산기업에 궐련을 매입할 때, 먼저 면세 궐련수출 계획 내에서 주관 세무기관에 《수출궐련 면세구매 허가증명 신청표》(첨부문건23 참조)의 발급을 신청하고, 《수출궐련 면세매입 허가증명》(첨부문건24 참조)를 궐련 생산기업에 전달한다. 궐련 생산기업은 해당 증명에 의거하여 주관 세무기관에 면세수속을 신고 처리한다.  이미 면세구매를 허가 받은 궐련에 대해, 궐련 생산기업은 소비세, 증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수출기업에 판매하고 주관 세무기업에 《수출궐련 기 면세증명 신청표》(첨부문건25 참조) 보고한다. 궐련 생산기업 주관 세무기관은 면세 심사비준 후, 《수출 궐련 기 면세증명》 (첨부문건26 참조)를 발급하고 궐련 수출 기업의 주관 세무기관에 직접 우편배송 한다.  궐련 수출기업(면세 궐련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기업, 직접 자가생산한 궐련을 수출하는 생산기업, 자가 생산한 궐련을 위탁 수출하는 생산기업 포함)은 궐련 수출통관일의 익월부터 다음 년도 4월 30일 전의 각 증치세 납세 신고기간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수출한 궐련의 면세 핵소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기한을 초과한 경우, 수출기업은 핵소를 신고할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증치세,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핵소 신고 시, 《수출궐련 면세핵소 신고표》(첨부문건27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 규정 신고 전자데이터 및 아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2. 수출외화수취 핵소단 3. 수출인보이스 4. 수출계약서 5. 《수출 궐련 기 면세증명》(면세궐련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기업 제출) 6. 대리수출화물증명 및 대리수출 협의서 부본(자가생산 궐련을 위탁 수출하는 생산기업 제출)   (7) 주관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자료  2. 내료가공(위탁가공)의 가공수출을 위탁한 화물의 면세증명 및 핵소처리  (1) 내료가공의 가공업무 위탁에 종사하는 수출기업이 가공기업이 발급한 가공비 일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가공비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익월 증치세 납세신고 기한 까지 《내료가공 면세증명 신청표》(첨부문건28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규정 전자데이터 및 아래의 자료를 주관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내료가공 면세증명》(첨부문건 29 참조)을 처리해야 한다.   1.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원본 및 사본 2. 가공기업이 발급한 가공비 일반 세금계산서 원본 및 사본 3. 주관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한 기타 자료   수출기업은 《내료가공 면세증명》을 가공기업에게 전달하고, 가공기업은 해당 증명을 소지하고 주관 세무기관에 가공비의 증치세, 소비세 면세수속을 신고 처리한다.  (2) 수출기업은 “내료가공” 무역방식으로 화물을 수출하고 세관 핵소수속을 처리한 후, 세관이 발급한 핵소 종결통지서, 《내료가공 수출화물 면세증명 핵소 신청표》(첨부문건30 참조)와 아래의 자료 및 규정 신고 전자데이터를 소지하여 주관 세무기관에 내료가공 수출화물 면세핵소 수속을 처리한다.   1.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원본 및 사본 2. 내료가공 면세증명 3. 가공기업이 발급한 가공비 일반 세금계산서 원본 및 사본 4. 주관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한 기타 자료   X. 관련 서류증명의 처리  [1] 대리수출화물 증명  위탁수출화물의 경우, 수탁인이 화물 수출 통관일부터 다음 년도 4월 15일 전까지 주관 세무기관에 《대리수출화물 증명》(첨부문건31 참조)의 발급을 신청하고, 즉시 위탁인에게 전달한다. 기한을 초과한 경우, 위탁인은 《대리수출화물 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대리수출화물 증명의 발급 신청 시, 《대리수출화물 증명 신청표》(첨부문건32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규정 신고 전자데이터 및 아래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대리수출협의 원본 및 사본 2.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3. 위탁인 세무등기증 부본 사본 4. 주관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한 기타 자료   위탁인이 퇴(면)세 자격을 정지당한 경우, 대리수출화물 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2] 대리수입화물 증명  수입가공무역 원자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인은 주관 세무기관에 대리수입화물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고 즉시 위탁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수탁인이 대리수입화물 증명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대리수입화물 증명 신청표》(첨부문건33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규정 신고 전자데이터 및 아래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가공무역 수첩 및 사본 2. 수입화물 통관신고서(가공무역 전용) 3. 대리수입 협의 원본 및 사본 4. 주관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한 기타 자료   [3] 수출화물 반송 보충세금 (미퇴세) 증명  수출화물이 반송이 발생한 경우, 수출기업은 주관 세무기관에 《수출화물 반송 보충세금(미퇴세)증명》(첨부문건34 참조)의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증명을 소지하고 세관에서 수출화물 반송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위탁수출화물이 반송된 경우, 위탁인이 수출화물 반송 보충세금(미퇴세)증명의 발급을 신청하고 수탁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수출화물 반송 보충세금(미퇴세)증명》발급 신청 시 《반송 보충세금 (미퇴세) 증명 신청표》(첨부문건35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규정 신고 전자데이터 및 아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수출화물 통관신고서(반송발생 시, 이미 퇴세를 신고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2. 수출인보이스(대외무역기업 제공 불필요) 3. 세수 통용 납부서 원본 및 사본 (반송발생 시, 퇴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생산기업이 당해년도에 반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4. 주관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자료   [4] 수출통관신고 증명서 재발급 및 수출 외환수취 핵소 증명서 재발급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또는 수출 외환수취 핵소단을 분실한 경우, 수출기업은 주관 세무기관에 수출 세관신고 증명서 또는 수출 외환수취 핵소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수출 세관신고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재발급 신청표》(첨부문건36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규정 신고 전자데이터 및 아래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수출화물 통관신고서(기타 일련페이지 또는 전자 Port 시스템을 통해 인쇄한 세관 신고서 정보 페이지) 2. 주관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자료   2. 수출 외환수취 핵소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출 외환수취 핵소 증명서 재발급 신청표》(첨부문건37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규정 신고 전자데이터 및 아래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수출퇴세 전용페이지 또는 기타 일련페이지 또는 전자 Port 시스템을 통해 인쇄한 세관 신고서 정보 페이지) 2. 주관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자료   [5] 수출퇴세 입하 분할신고서  대외무역기업이 구입한 화물을 퇴(면)세를 분할신고 해야 하는 경우 및 생산기업이 구입한 비자가생산 과세소비품에 대한 퇴세를 하는 경우, 수출기업은 아래 자료를 작성하여 주관 세무기관에 《수출퇴세 입하 분할신고서》(첨부문건38 참조)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공제페이지), 소비세 전용납부서, 이미 발급한 적이 있는 입하 분할 신고서  2.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명세서 사본  3. 주관 세무기관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자료 및 규정 신고 전자데이터  [6] 수출화물의 내수판매 전환 증명서  대외무역기업이 기존 수출재고장에 기입한 수출화물을 내수판매로 전환하거나 내수판매 화물로 간주하여 징수하는 경우 및 이미 퇴(면)세를 신고한 수출화물이 반송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내수판매로 전환한 경우, 대외무역기업은 화물의 내수판매 또는 내수판매 간주가 발생한 당월, 주관 세무기관에 수출화물 내수판매 전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수출화물 내수판매 전환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수출화물 내수판매 전환 증명서 신청표》(첨부문건39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규정 신고 전자데이터 및 아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공제페이지),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 입하 분할신고서, 수출화물 반송 보충세금(미퇴세) 증명서 원본 및 사본  2. 내수판매 화물 세금계산서(기장페이지) 원본 및 사본  3. 주관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자료  대외무역기업은 수출화물 내수판매 전환 증명서를 취득한 후 다음 증치세 납세 신고기한 내에 해당 증명서를 매입세액의 공제증빙으로 사용한다.  (7) 입찰증명 통지서  외국정부의 대출 또는 국제금융조직의 대출을 이용하여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입찰기구가 입찰을 종료하고 입찰기업이 체결한 공급계약이 발효된 후, 그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입찰증명 통지서》를 신청해야 한다. 입찰기구는 주관 세무기관에 《입찰증명 통지서》 및 입찰설비 명세표(첨부문건40 참조)를 제출하고 아래의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국가입찰심사위원회《입찰심사 결과 통지서》  2. 입찰프로젝트의 환급불가 화물 명세서(첨부문건41 참조)  3. 입찰기업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의 명칭, 주소, 우편번호  4. 대출 프로젝트 가운데 외국기업이 재(再)외주 입찰을 받아 국내기업에 공급한 것에  포함되는 전기기계제품은 입찰기구가 외주계약에 대해 발급한 검증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5. 대출 프로젝트 중 연합조직이 입찰 받은 경우, 입찰기구가 연합조직의 협의에 대해 발급한 검증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6.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한 기타자료  [8] 분실한 관련증명서의 재발급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수출퇴세 관련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원 증명서 발급 세무기관에 《수출퇴세 관련증명서 재발급에 관한 신청》(첨부문건42 참조)를 제출하고, 규정 신고 전자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원 증명서 발급 세무기관은 기존에 발급한 관련증명서를 실태 조사한 후, 관련 증명서를 새로 발급한다. 단, “재발급”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XI. 기타 규정  [1] 수출기업과 기타단위는 특수구역의 수도/전기/가스 외에 수출 화물 및 용역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2] 증치세 환급 세율이 조정된 경우, 그 집행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세관에 수출 신고한 화물에 속하는 경우,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에 명시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비세관신고 수출판매된 화물에 속하는 경우, 수출 세금계산서 또는 일반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세구 내의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수출한 화물 및 보세구 수출을 통한 화물은 화물이 국경을 떠날 때, 세관이 발급한 출국화물 비안명세표 상에 명시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매입에 따라 자가생산 화물로 간주하여 면저퇴세 신고할 수 있는 집단공사(주: 그룹회사)로 인증이 필요한 경우, 집단공사 본사는 반드시 서면 인정신청서 및 계열회사(成员企业)의 증명자료를 주관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집단공사 본사 소재지의 지급(地级)이상 (지급 포함) 세무기관이 인증한다.  집단공사 본사 및 그 계열회사가 동일한 구역 또는 동일한 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에 있지 않은 경우, 집단공사 본사 소재지의 성급 국가세무국이 인증한다. 본사 및 그 계열회사가 동일한 성이 있지 않은 경우, 본사 소재지의 성급 국가 세무국이 인증문건을 계열회사 소재지의 성급 국가세무국에 전달한다.  [4] 경외단위, 개인이 대출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대출금을 지급할 수 없는 수출 화물 및 용역 및 수출기업이 차액 외화결제방식으로 외화결제를 진행한 진료가공 수출화물은 모두 외환관리부문이 발급한 수출 외화수취 핵소단(페이퍼 수출 외환수취 핵소단의 제출을 면제한 시범지역의 세무기관은 외환관리부문이 전달한 외환수취 핵소 전자데이터를 받음)을 수출기업과 기타단위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퇴(면)세를 신고할 수 있다.  [5] 장기 외환결제에 속하나 외환관리부문에 장기 외환수취 비안한 예상 외환수취일자를 초과하지 않은 수출 화물 및 용역을 장기 외환결제 비안 증명서를 제공하여 퇴(면)세를 신청하는 경우, 수출기업과 기타단위는 예상 외환수취일로부터 30일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수출 외환수취 핵소단(수출 퇴세 페이지)을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제공하지 않거나 페이퍼로 된 외환수취 핵소단의 제출을 면제받는 시범지역의 세무기관이 외환관리부문으로부터 전달받은 외환수취 핵소 전자데이터의 “핵소일자”가 예상 외환수취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관련 수출 퇴(면)세를 더 이상 처리하지 않으며, 이미 퇴(면)세를 처리한 경우, 세무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퇴(면)세 처리한 세금을 청구 회수한다.  [6] 특수구역의 수도/전기/가스는 구(区)내 생산기업이 규정기한에 따라 퇴(면)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원가로 전환해야 한다.  [7] 증치세 면세정책을 적용하는 수출 화물 및 용역은 특수구역 내의 기업이 수출한 특수구역 내의 화물,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수출로 간주하는 화물 용역 외에,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만약 규정된 납세신고 기간 내에 규정에 따라 면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내수판매 화물과 가공수리수선 용역으로 간주하여, 증치세, 소비세 면제하고, 내수판매 면세에 속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면세를 보충 보고하는 것 외에, 주관 세무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 관리법》에 따라 명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내수판매 세금징수에 속하는 경우, 면세신고 기간 익월 증치세 납세 신고기간 내에 증치세, 소비세 납부를 신고해야 한다.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는 당해년도의 수출 화물 및 용역에 대해, 증치세 퇴(면)세, 면세 기신고분, 내수판매에 따라 기 징수한 증치세, 소비세 및 이미 대리수출증명을 발급한 수출 화물 및 용역 분을 제외한 잔액을 내수판매 면세 화물 전 관(款)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아울러 다음 년도 6월의 증치세 납세 신고기간 내에 증치세, 소비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8] 증치세 면세 정책이 적용되는 수출 화물 및 용역을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면세를 포기하여, 화물 내수판매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단 포기한 면세는 36개월 내에 변경할 수 없다.  [9] 국가세무총국의 비준을 거쳐 면세점에 판매한 궐련 외에 면세 수출한 궐련은 지정항구(첨부문건43 참조)에서 직접 세관신고 수출해야 한다.  [10] 수출기업과 기타단위는 재세[2012]39호 문건 제9조 제(2)항 제6이 열거한 화물을 수출하고, 수출기업과 기타단위는 재세[2012]39호 문건 첨부문건9에 열거된 원료에 대응되는 세관세칙호의 수출 화물 및 용역 퇴세율 문고(文库)중 대응되는 퇴세율에 따라 납세/면세 또는 퇴(면)세를 신고해야 한다.  수출기업과 기타단위가 만약 상술규정에 따라 납세 또는 면세, 퇴(면)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관 세무기관이 발견을 거쳐 본 조항 규정의 집행 외에, 주관 세무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에 따라 내리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XII. 증치세 세금징수 정책을 적용하는 수출 화물 및 용역은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증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내수판매 화물의 증치세 납부의 통일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XIII. 규정위반 처리  [1] 수출기업과 기타단위에 아래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 관리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규정에 따라 관련 수출화물 퇴(면)세 장부, 증빙, 자료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않는 경우  2. 규정에 따라 비안 서류를 장정(装订), 보존, 보관하지 않는 경우  [2] 수출기업 및 기타단위가 세무기관의 검사를 거절하거나 관련 수출화물의 퇴(면)세 장부, 증빙, 자료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 관리법》제70조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3] 수출기업이 허위 비안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 관리법》제70조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4] 진료가공업무에 종사하는 생산기업이 규정기한에 따라 진료가공 등기, 신고, 핵소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제 62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를 진행한 후 관련수속을 재처리 해야 한다.  [5] 수출기업 및 기타단위가 세금계산서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6] 수출기업과 기타단위가 수출을 거짓 보고하거나 기타 허위수단으로 국가의 수출퇴세금을 편취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이 그 편취한 환급세금을 추징하고 편취세금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국가 수출퇴세금 편취에 대해 성급이상(성급 포함)세무기관이 비준하고 아래의 규정에 따라 그 수출 퇴(면)세 자격을 정지한다.  1. 편취한 국가 수출퇴세금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그 수출세금 환급을 6개월 이상 1년 이하 정지할 수 있다.  2. 편취한 국가 수출퇴세금이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그 수출세금 환급을 1년 이상 1년 6개월 이하 정지할 수 있다.  3. 편취한 국가 수출퇴세금이 50만 위안 이상, 2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또는 수출퇴세금을 편취하여 행정처벌을 받고 2년 내에 30만 위안 이상 150만 위안 미만의 국가 수출퇴세금을 또 편취한 경우, 그 수출퇴세금을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정지할 수 있다.  4. 편취한 국가 수출퇴세금이 250만 위안 또는 수출퇴세금을 편취하여 행정처벌을 받고 2년 내에 150만 위안 이상의 국가 수출퇴세금을 또 편취한 경우, 그 수출세금 환급을 2년 이상 3년 이하 정지할 수 있다.  5. 수출퇴세 처리 정지기간은 성급 이상(성급 포함) 세무기관이 비준한 후 발급한 《세무행정처벌결정서》의 결정일이 시작일이 된다.  XIV. 본 방법 제 4, 5, 6, 7조 중 퇴(면)세 신고기한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관의 수출화물 면세신고 기한규정 및 제10조 제(1)항 중 대리수출화물 증명서 발급신청 기한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1년의 화물 및 용역의 수출 퇴(면)세 신고기한, 제9조 제(2)항 제3관의 수출화물의 면세 신고기한, 제10조 제(1)항 대리수출화물 증명서 발급신청 기한은 제11조 제(7)항 제2관이 규정한 기한에서 3개월을 연장한다.  본 방법의 기타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시작일자: 세관 통관수출에 속하는 화물 용역은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상에 명시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비통관수출 판매에 속하는 화물은 수출인보이스(해외판매 세금계산서)또는 일반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보세구 내의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수출한 화물 및 보세구 수출을 거친 화물은 화물이 국경을 떠날 때, 세관이 발급한 출국 화물비안명세서 상에 명시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폐지문건목록》(첨부문건44 참조)에 열거된 문건 및 조항은 동시에 폐지한다. 본 방법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화물 증치세, 소비세의 기타 관리규정은 계속하여 원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전송: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  | **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出口**  **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  **管理办法》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24号    　　为了方便纳税人办理出口货物劳务退（免）税、免税，提高服务质量，进一步规范管理，国家税务总局对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的管理规定进行了清理、完善，制定了《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管理办法》。现予发布。    附件：  1.出口退(免）税资格认定申请表  2.出口退（免）税资格认定变更申请表  3.出口退（免）税资格认定注销申请表  4.免抵退税申报汇总表  5.免抵退税申报汇总表附表  6.免抵退税申报资料情况表  7.生产企业出口货物免、抵、退税申报明细表  8.生产企业出口非自产货物消费税退税申报表  9.生产企业进料加工登记申报表  10.生产企业进料加工登记变更申请表  11.生产企业进料加工进口料件申报明细表  12.生产企业进料加工出口货物扣除保税进口料件申请表  13.生产企业进料加工手册登记核销申请表  14.生产企业出口货物扣除国内免税原材料申请表  15.外贸企业出口退税汇总申报表  16.外贸企业出口退税进货明细申报表  17.外贸企业出口退税出口明细申报表  18.购进自用货物退税申报表  19.出口已使用过的设备退税申报表  20.出口已使用过的设备折旧情况确认表  21.退（免）税货物、标识对照表  22.免税出口货物劳务明细表  23.准予免税购进出口卷烟证明申请  24.准予免税购进出口卷烟证明  25.出口卷烟已免税证明申请表  26.出口卷烟已免税证明  27.出口卷烟免税核销申报表  28.来料加工免税证明申请表  29.来料加工免税证明  30.来料加工出口货物免税证明核销申请表  31.代理出口货物证明  32.代理出口货物证明申请表  33.代理进口货物证明申请表  34.出口货物退运已补税（未退税）证明  35.退运已补税（未退税）证明申请表  36.补办出口货物报关单申请表  37.补办出口收汇核销单证明申请表  38.出口退税进货分批申报单  39.出口货物转内销证明申报表  40.中标证明通知书  41.中标项目不退税货物清单  42.关于补办出口退税有关证明的申请  43.免税卷烟指定出口口岸  44.废止文件目录    附件下载：[附件.zip](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11985939.files/n11985960.zip)    　国家税务总局  　　二○一二年六月十四日  **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  **管理办法**    　　一、根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及其实施细则，以及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政策的规定，制定本办法。  　　二、出口企业和其他单位办理出口货物、视同出口货物、对外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以下统称出口货物劳务）增值税、消费税的退（免）税、免税，适用本办法。  出口企业和出口货物劳务的范围，退（免）税和免税的适用范围和计算办法，按《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出口货物增值税和消费税政策的通知》（财税〔2012〕39号）执行。  　　三、出口退（免）税资格的认定  　　（一）出口企业应在办理对外贸易经营者备案登记或签订首份委托出口协议之日起30日内，填报《出口退（免）税资格认定申请表》（见附件1），提供下列资料到主管税务机关办理出口退（免）税资格认定。  　　1．加盖备案登记专用章的《对外贸易经营者备案登记表》或《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  　　2．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收发货人报关注册登记证书；  　　3．银行开户许可证；  　　4．未办理备案登记发生委托出口业务的生产企业提供委托代理出口协议，不需提供第1、2项资料；  　　5．主管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  　　（二）其他单位应在发生出口货物劳务业务之前，填报《出口退（免）税资格认定申请表》，提供银行开户许可证及主管税务机关要求的其他资料，到主管税务机关办理出口退（免）税资格认定。  　　（三）出口企业和其他单位在出口退（免）税资格认定之前发生的出口货物劳务，在办理出口退（免）税资格认定后，可以在规定的退（免）税申报期内按规定申报增值税退（免）税或免税，以及消费税退（免）税或免税。  　　（四）出口企业和其他单位出口退（免）税资格认定的内容发生变更的，须自变更之日起30日内，填报《出口退（免）税资格认定变更申请表》（见附件2），提供相关资料向主管税务机关申请变更出口退（免）税资格认定。  　　（五）需要注销税务登记的出口企业和其他单位，应填报《出口退（免）税资格认定注销申请表》（见附件3），向主管税务机关申请注销出口退（免）税资格，然后再按规定办理税务登记的注销。  出口企业和其他单位在申请注销认定前，应先结清出口退（免）税款。注销认定后, 出口企业和其他单位不得再申报办理出口退（免）税。  　　四、生产企业出口货物免抵退税的申报  　　（一）申报程序和期限  　　企业当月出口的货物须在次月的增值税纳税申报期内，向主管税务机关办理增值税纳税申报、免抵退税相关申报及消费税免税申报。  　　企业应在货物报关出口之日（以出口货物报关单〈出口退税专用〉上的出口日期为准，下同）次月起至次年4月30日前的各增值税纳税申报期内收齐有关凭证，向主管税务机关申报办理出口货物增值税免抵退税及消费税退税。逾期的，企业不得申报免抵退税。  　　（二）申报资料  　　1．企业向主管税务机关办理增值税纳税申报时，除按纳税申报的规定提供有关资料外，还应提供下列资料：  　　（1）主管税务机关确认的上期《免抵退税申报汇总表》（见附件4）；  　　（2）主管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  　　2．企业向主管税务机关办理增值税免抵退税申报，应提供下列凭证资料：  　　（1）《免抵退税申报汇总表》及其附表（见附件5）；  　　（2）《免抵退税申报资料情况表》（见附件6）；  　　（3）《生产企业出口货物免抵退税申报明细表》（见附件7）；  　　（4）出口货物退（免）税正式申报电子数据；  　　（5）下列原始凭证：  　　①出口货物报关单（出口退税专用，以下未作特别说明的均为此联）（保税区内的出口企业可提供中华人民共和国海关保税区出境货物备案清单，简称出境货物备案清单，下同）；  　　②出口收汇核销单（出口退税联，以下未作特别说明的均为此联）（远期结汇的提供远期收汇备案证明，保税区内的出口企业提供结汇水单。跨境贸易人民币结算业务、试行出口退税免予提供纸质出口收汇核销单地区和货物贸易外汇管理制度改革试点地区的企业免予提供，下同）；  　　③出口发票；  　　④委托出口的货物，还应提供受托方主管税务机关签发的代理出口货物证明，以及代理出口协议复印件；  　　⑤主管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  　　3．生产企业出口的视同自产货物以及列名生产企业出口的非自产货物，属于消费税应税消费品（以下简称应税消费品）的，还应提供下列资料：  　　（1）《生产企业出口非自产货物消费税退税申报表》（附件8）；  　　（2）消费税专用缴款书或分割单，海关进口消费税专用缴款书、委托加工收回应税消费品的代扣代收税款凭证原件或复印件。  　　（三）从事进料加工业务的企业，还须按下列规定办理手册登记、进口料件申报和手册核销：  　　 1.企业在办理进料加工贸易手（账）册后，应于料件实际进口之日起至次月（采用实耗法扣除的，在料件实际耗用之日起至次月）的增值税纳税申报期内,填报《生产企业进料加工登记申报表》（见附件9），提供正式申报的电子数据及下列资料，向主管税务机关申请办理进料加工登记手续。  　　（1）采用纸质手册的企业应提供进料加工手册原件及复印件；采用电子化手册的企业应提供海关签章的加工贸易电子化纸质单证；采用电子账册的企业应提供海关核发的《加工贸易联网监管企业电子账册备案证明》。  　　（2）主管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  　　以双委托方式（生产企业进、出口均委托出口企业办理，下同）从事进料加工业务的企业，由委托方凭代理进、出口协议及受托方的上述资料的复印件，到主管税务机关办理进料加工登记手续。  　　已办理进料加工登记手续的纸质手册、电子化手册或电子账册，如发生加工单位、登记进口料件总额、登记出口货物总额、手册有效期等项目变更的，企业应在变更事项发生之日起至次月的增值税纳税申报期内，填报《生产企业进料加工登记变更申请表》（附件10），提供正式申报电子数据及海关核发的变更后的相关资料向主管税务机关申报办理手（账）册变更手续。  　　2.从事进料加工业务的企业应于料件实际进口之日起至次月（采用实耗法计算的，在料件实际耗用之日起至次月）的增值税纳税申报期内，持进口货物报关单、代理进口货物证明及代理进口协议等资料向主管税务机关申报《生产企业进料加工进口料件申报明细表》（见附件11）、《生产企业进料加工出口货物扣除保税进口料件申请表》（见附件12）。  　　3.采用纸质手册或电子化手册的企业，应在海关签发核销结案通知书（以结案日期为准，下同）之日起至次月的增值税纳税申报期内填报《生产企业进料加工手册登记核销申请表》（见附件13），提供正式申报电子数据及纸质手册或电子化手册，向主管税务机关申请办理进料加工的核销手续；采用电子账册的企业，应在海关办结一个周期核销手续后，在海关签发核销结案通知书之日起至次月的增值税纳税申报期内填报《生产企业进料加工手册登记核销申请表》，提供正式申报电子数据，向主管税务机关申请办理进料加工的核销手续。  　　企业应根据核销后的免税进口料件金额，计算调整当期的增值税纳税申报和免抵退税申报。  　　（四）购进不计提进项税额的国内免税原材料用于加工出口货物的，企业应单独核算用于加工出口货物的免税原材料，并在免税原材料购进之日起至次月的增值税纳税申报期内，填报《生产企业出口货物扣除国内免税原材料申请表》（见附件14），提供正式申报电子数据，向主管税务机关办理申报手续。  　　（五）免抵退税申报数据的调整  　　对前期申报错误的，在当期进行调整。在当期用负数将前期错误申报数据全额冲减，再重新全额申报。  　　发生本年度退运的，在当期用负数冲减原免抵退税申报数据；发生跨年度退运的，应全额补缴原免抵退税款，并按现行会计制度的有关规定进行相应调整。  本年度已申报免抵退税的，如须实行免税办法或征税办法，在当期用负数冲减原免抵退税申报数据；跨年度已申报免抵退税的，如须实行免税或征税办法，不用负数冲减，应全额补缴原免抵退税款，并按现行会计制度的有关规定进行相应调整。  　　五、外贸企业出口货物免退税的申报  　　（一）申报程序和期限  　　企业当月出口的货物须在次月的增值税纳税申报期内，向主管税务机关办理增值税纳税申报，将适用退（免）税政策的出口货物销售额填报在增值税纳税申报表的“免税货物销售额”栏。  　　企业应在货物报关出口之日次月起至次年4月30日前的各增值税纳税申报期内，收齐有关凭证，向主管税务机关办理出口货物增值税、消费税免退税申报。经主管税务机关批准的，企业在增值税纳税申报期以外的其他时间也可办理免退税申报。逾期的，企业不得申报免退税。  　　（二）申报资料  　　1．《外贸企业出口退税汇总申报表》（见附件15）；  　　2．《外贸企业出口退税进货明细申报表》（见附件16）；  　　3．《外贸企业出口退税出口明细申报表》（见附件17）；  　　4．出口货物退（免）税正式申报电子数据；  　　5．下列原始凭证  　　（1）出口货物报关单；  　　（2）增值税专用发票（抵扣联）、出口退税进货分批申报单、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提供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的，还需同时提供进口货物报关单，下同）；  　　（3）出口收汇核销单；  　　（4）委托出口的货物，还应提供受托方主管税务机关签发的代理出口货物证明，以及代理出口协议副本；  　　（5）属应税消费品的，还应提供消费税专用缴款书或分割单、海关进口消费税专用缴款书（提供海关进口消费税专用缴款书的，还需同时提供进口货物报关单，下同）；  （6）主管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  　　六、出口企业和其他单位出口的视同出口货物及对外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的退（免）税申报  　　报关进入特殊区域并销售给特殊区域内单位或境外单位、个人的货物，特殊区域外的生产企业或外贸企业的退（免）税申报分别按本办法第四、五条的规定办理。  　　其他视同出口货物和对外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属于报关出口的，为报关出口之日起，属于非报关出口销售的，为出口发票或普通发票开具之日起，出口企业或其他单位应在次月至次年4月30日前的各增值税纳税申报期内申报退（免）税。逾期的，出口企业或其他单位不得申报退（免）税。申报退（免）税时，生产企业除按本办法第四条，外贸企业和没有生产能力的其他单位除按本办法第五条的规定申报〔不提供出口收汇核销单；非报关出口销售的不提供出口货物报关单和出口发票，属于生产企业销售的提供普通发票〕外，下列货物劳务，出口企业和其他单位还须提供下列对应的补充资料：  　　（一）对外援助的出口货物，应提供商务部批准使用援外优惠贷款的批文（“援外任务书”）复印件或商务部批准使用援外合资合作项目基金的批文（“援外任务书”）复印件。  　　（二）用于对外承包工程项目的出口货物，应提供对外承包工程合同；属于分包的，由承接分包的出口企业或其他单位申请退（免）税，申请退（免）税时除提供对外承包合同外，还须提供分包合同（协议）。  　　（三）用于境外投资的出口货物，应提供商务部及其授权单位批准其在境外投资的文件副本。  　　（四）向海关报关运入海关监管仓库供海关隔离区内免税店销售的货物，提供的出口货物报关单应加盖有免税品经营企业报关专用章；上海虹桥、浦东机场海关国际隔离区内的免税店销售的货物，提供的出口货物报关单应加盖免税店报关专用章，并提供海关对免税店销售货物的核销证明。  　　（五）销售的中标机电产品，应提供下列资料：  　　1．招标单位所在地主管税务机关签发的《中标证明通知书》；  　　2．由中国招标公司或其他国内招标组织签发的中标证明（正本）；  　　3．中标人与中国招标公司或其他招标组织签订的供货合同（协议）；  　　4．中标人按照标书规定及供货合同向用户发货的发货单；  　　5．中标机电产品用户收货清单；  　　6．外国企业中标再分包给国内企业供应的机电产品，还应提供与中标企业签署的分包合同（协议）。  　　（六）销售给海上石油天然气开采企业的自产的海洋工程结构物，应提供销售合同。  　 （七）销售给外轮、远洋国轮的货物，应提供列明销售货物名称、数量、销售金额并经外轮、远洋国轮船长签名的出口发票。  　　（八）生产并销售给国内和国外航空公司国际航班的航空食品，应提供下列资料：  　　1．与航空公司签订的配餐合同；  　　2．航空公司提供的配餐计划表（须注明航班号、起降城市等内容）；  　　3．国际航班乘务长签字的送货清单（须注明航空公司名称、航班号等内容）。  　　（九）对外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应提供下列资料：  　　1．修理修配船舶以外其他物品的提供贸易方式为“修理物品”的出口货物报关单；  　　2．与境外单位、个人签署的修理修配合同；  3．维修工作单（对外修理修配飞机业务提供）。  　　七、出口货物劳务退（免）税其他申报要求  　　（一）输入特殊区域的水电气，由购买水电气的特殊区域内的生产企业申报退税。企业应在购进货物增值税专用发票的开具之日次月起至次年4月30日前的各增值税纳税申报期内向主管税务机关申报退税。逾期的，企业不得申报退税。申报退税时，应填报《购进自用货物退税申报表》（见附件18），提供正式电子申报数据及下列资料：  　　1．增值税专用发票（抵扣联）；  　　2．支付水、电、气费用的银行结算凭证（加盖银行印章的复印件）。  　　（二）运入保税区的货物，如果属于出口企业销售给境外单位、个人，境外单位、个人将其存放在保税区内的仓储企业，离境时由仓储企业办理报关手续，海关在其全部离境后，签发进入保税区的出口货物报关单的，保税区外的生产企业和外贸企业申报退（免）税时，除分别提供本办法第四、五条规定的资料外，还须提供仓储企业的出境货物备案清单。确定申报退（免）税期限的出口日期以最后一批出境货物备案清单上的出口日期为准。  　　（三）出口企业和其他单位出口的在2008年12月31日以前购进的设备、2009年1月1日以后购进但按照有关规定不得抵扣进项税额的设备、非增值税纳税人购进的设备，以及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地区的出口企业和其他单位出口在本企业试点以前购进的设备，如果属于未计算抵扣进项税额的已使用过的设备，均实行增值税免退税办法。  　　出口企业和其他单位应在货物报关出口之日次月起至次年4月30日前的各增值税纳税申报期内，向主管税务机关单独申报退税。逾期的，出口企业和其他单位不得申报退税。申报退税时应填报《出口已使用过的设备退税申报表》（见附件19），提供正式申报电子数据及下列资料：  　　1.出口货物报关单；  　　2.委托出口的货物，还应提供受托方主管税务机关签发的代理出口货物证明，以及代理出口协议；  　　3.增值税专用发票（抵扣联）或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  　　4.出口收汇核销单；  　　5.《出口已使用过的设备折旧情况确认表》（见附件20）；  　　6.主管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  　　（四）边境地区一般贸易或边境小额贸易项下以人民币结算的从所在省（自治区）的边境口岸出口到接壤毗邻国家，并采取银行转账人民币结算方式的出口货物，生产企业、外贸企业申报退（免）税时，除分别提供本办法第四、五条规定的资料外，还应提供人民币结算的银行入账单，银行入账单应与外汇管理部门出具的出口收汇核销单相匹配。确有困难不能提供银行入账单的，可提供签注“人民币核销”的出口收汇核销单。  　　（五）跨境贸易人民币结算方式出口的货物，出口企业申报退（免）税不必提供出口收汇核销单。  （六）出口企业和其他单位申报附件21所列货物的退（免）税，应在申报报表中的明细表“退（免）税业务类型”栏内填写附件21所列货物对应的标识。  　　八、退（免）税原始凭证的有关规定  　　（一）增值税专用发票（抵扣联）  　　出口企业和其他单位购进出口货物劳务取得的增值税专用发票，应按规定办理增值税专用发票的认证手续。进项税额已计算抵扣的增值税专用发票，不得在申报退（免）税时提供。  　　出口企业和其他单位丢失增值税专用发票的发票联和抵扣联的，经认证相符后，可凭增值税专用发票记账联复印件及销售方所在地主管税务机关出具的丢失增值税专用发票已报税证明单，向主管税务机关申报退（免）税。  　　出口企业和其他单位丢失增值税专用发票抵扣联的，在增值税专用发票认证相符后，可凭增值税专用发票的发票联复印件向主管出口退税的税务机关申报退（免）税。  　　（二）出口货物报关单  　　出口企业应在货物报关出口后及时在“中国电子口岸出口退税子系统”中进行报关单确认操作。及时查询出口货物报关单电子信息，对于无出口货物报关单电子信息的，应及时向中国电子口岸或主管税务机关反映。  　　受托方将代理出口的货物与其他货物一笔报关出口的,委托方申报退（免）税时可提供出口货物报关单的复印件。  　　（三）出口收汇核销单  　　出口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自发生之日起2年内，申报出口退（免）税时，必须提供出口收汇核销单：  　　1．纳税信用等级评定为C级或D级的；  　　2．未在规定期限内办理出口退（免）税资格认定的；  　　3．财务会计制度不健全、日常申报出口退（免）税时多次出现错误的；  　　4．首次申报办理出口退（免）税的；  　　5．有偷税、逃避追缴欠税、骗取出口退税、抗税、虚开增值税专用发票或农产品收购发票、接受虚开增值税专用发票（善意取得虚开增值税专用发票除外）等涉税违法行为的；  　　出口企业不存在上述5种情形的，包括因改制、改组以及合并、分立等原因新设立并重新办理出口退（免）税资格认定且原出口企业不存在上述所列情形，并经省级税务机关批准的，在申报出口退（免）税时，可暂不提供出口收汇核销单。但须在出口退（免）税申报截止之日前，收齐并提供按月依申报明细表顺序装订成册的出口收汇核销单。  　　（四）有关备案单证  　　出口企业应在申报出口退（免）税后15日内，将所申报退（免）税货物的下列单证，按申报退（免）税的出口货物顺序，填写《出口货物备案单证目录》，注明备案单证存放地点，以备主管税务机关核查。  　　1．外贸企业购货合同、生产企业收购非自产货物出口的购货合同，包括一笔购销合同下签订的补充合同等；  　　2．出口货物装货单；  　　3．出口货物运输单据（包括：海运提单、航空运单、铁路运单、货物承运单据、邮政收据等承运人出具的货物单据，以及出口企业承付运费的国内运输单证）。  　　若有无法取得上述原始单证情况的，出口企业可用具有相似内容或作用的其他单证进行单证备案。除另有规定外，备案单证由出口企业存放和保管，不得擅自损毁，保存期为5年。视同出口货物及对外提供修理修配劳务不实行备案单证管理。  　　九、出口企业和其他单位适用免税政策出口货物劳务的申报  　　（一）特殊区域内的企业出口的特殊区域内的货物、出口企业或其他单位视同出口的适用免税政策的货物劳务，应在出口或销售次月的增值税纳税申报内，向主管税务机关办理增值税、消费税免税申报。  　　（二）其他的适用免税政策的出口货物劳务，出口企业和其他单位应在货物劳务免税业务发生的次月（按季度进行增值税纳税申报的为次季度），填报《免税出口货物劳务明细表》（见附件22），提供正式申报电子数据，向主管税务机关办理免税申报手续。出口货物报关单（委托出口的为代理出口货物证明）等资料留存企业备查。  　　非出口企业委托出口的货物，委托方应在货物劳务免税业务发生的次月（按季度进行增值税纳税申报的为次季度）的增值税纳税申报期内，凭受托方主管税务机关签发的代理出口货物证明以及代理出口协议副本等资料，向主管税务机关办理增值税、消费税免税申报。  　　出口企业和其他单位未在规定期限内申报出口退（免）税或申报开具《代理出口货物证明》，以及已申报增值税退（免）税，却未在规定期限内向税务机关补齐增值税退（免）税凭证的，如果在申报退（免）税截止期限前已确定要实行增值税免税政策的，出口企业和其他单位可在确定免税的次月的增值税纳税申报期，按前款规定的手续向主管税务机关申报免税。已经申报免税的，不得再申报出口退（免）税或申报开具代理出口货物证明。  　　（三）本条第（二）项第三款出口货物若已办理退（免）税的，在申报免税前，外贸企业及没有生产能力的其他单位须补缴已退税款；生产企业按本办法第四条第（五）项规定，调整申报数据或全额补缴原免抵退税款。  　　（四）相关免税证明及免税核销办理  　　1.国家计划内出口的卷烟相关证明及免税核销办理  　　卷烟出口企业向卷烟生产企业购进卷烟时，应先在免税出口卷烟计划内向主管税务机关申请开具《准予免税购进出口卷烟证明申请表》（见附件23），然后将《准予免税购进出口卷烟证明》（见附件24）转交卷烟生产企业，卷烟生产企业据此向主管税务机关申报办理免税手续。  　　已准予免税购进的卷烟，卷烟生产企业须以不含消费税、增值税的价格销售给出口企业，并向主管税务机关报送《出口卷烟已免税证明申请表》（见附件25）。卷烟生产企业的主管税务机关核准免税后，出具《出口卷烟已免税证明》（见附件26），并直接寄送卷烟出口企业主管税务机关。  　　卷烟出口企业（包括购进免税卷烟出口的企业、直接出口自产卷烟的生产企业、委托出口自产卷烟的生产企业）应在卷烟报关出口之日次月起至次年4月30日前的各增值税纳税申报期内，向主管税务机关办理出口卷烟的免税核销手续。逾期的，出口企业不得申报核销，应按规定缴纳增值税、消费税。申报核销时，应填报《出口卷烟免税核销申报表》（见附件27），提供正式申报电子数据及下列资料：  　　（1）出口货物报关单；  　　（2）出口收汇核销单；  　　（3）出口发票；  　　（4）出口合同；  　　（5）《出口卷烟已免税证明》（购进免税卷烟出口的企业提供）；  　　（6）代理出口货物证明，以及代理出口协议副本（委托出口自产卷烟的生产企业提供）；  　　（7）主管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  　　2.来料加工委托加工出口的货物免税证明及核销办理  　　（1）从事来料加工委托加工业务的出口企业，在取得加工企业开具的加工费的普通发票后，应在加工费的普通发票开具之日起至次月的增值税纳税申报期内，填报《来料加工免税证明申请表》（见附件28），提供正式申报电子数据，及下列资料向主管税务机关办理《来料加工免税证明》（见附件29）。  　　①进口货物报关单原件及复印件；  　　②加工企业开具的加工费的普通发票原件及复印件；  　　③主管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  　　出口企业应将《来料加工免税证明》转交加工企业，加工企业持此证明向主管税务机关申报办理加工费的增值税、消费税免税手续。  　　（2）出口企业以“来料加工”贸易方式出口货物并办理海关核销手续后，持海关签发的核销结案通知书、《来料加工出口货物免税证明核销申请表》（见附件30）和下列资料及正式申报电子数据，向主管税务机关办理来料加工出口货物免税核销手续。  　　①出口货物报关单原件及复印件；  　　②来料加工免税证明；  　　③加工企业开具的加工费的普通发票原件及复印件;  ④主管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  　　十、有关单证证明的办理  　　（一）代理出口货物证明  　　委托出口的货物，受托方须自货物报关出口之日起至次年4月15日前，向主管税务机关申请开具《代理出口货物证明》（附件31），并将其及时转交委托方，逾期的，受托方不得申报开具《代理出口货物证明》。申请开具代理出口货物证明时应填报《代理出口货物证明申请表》（见附件32），提供正式申报电子数据及下列资料：  　　 1.代理出口协议原件及复印件；  　　 2．出口货物报关单；  　　 3.委托方税务登记证副本复印件；  　　 4.主管税务机关要求报送的其他资料。  　　受托方被停止退（免）税资格的，不得申请开具代理出口货物证明。  　　（二）代理进口货物证明  　　委托进口加工贸易料件，受托方应及时向主管税务机关申请开具代理进口货物证明，并及时转交委托方。受托方申请开具代理进口货物证明时，应填报《代理进口货物证明申请表》（见附件33），提供正式申报电子数据及下列资料：  　　1．加工贸易手册及复印件；  　　2．进口货物报关单（加工贸易专用）；  　　3．代理进口协议原件及复印件；  　　4．主管税务机关要求报送的其他资料。  　　（三）出口货物退运已补税（未退税）证明  　　出口货物发生退运的，出口企业应先向主管税务机关申请开具《出口货物退运已补税（未退税）证明》（附件34），并携其到海关申请办理出口货物退运手续。委托出口的货物发生退运的，由委托方申请开具出口货物退运已补税（未退税）证明并转交受托方。申请开具《出口货物退运已补税（未退税）证明》时应填报《退运已补税（未退税）证明申请表》（见附件35），提供正式申报电子数据及下列资料：  　　1.出口货物报关单（退运发生时已申报退税的，不需提供）；  　　2.出口发票（外贸企业不需提供）；  　　3.税收通用缴款书原件及复印件（退运发生时未申报退税的、以及生产企业本年度发生退运的、不需提供）；  　　4.主管税务机关要求报送的其他资料。  　　（四）补办出口报关单证明及补办出口收汇核销单证明  　　丢失出口货物报关单或出口收汇核销单的，出口企业应向主管税务机关申请开具补办出口报关单证明或补办出口收汇核销单证明。  　　1．申请开具补办出口报关单证明的，应填报《补办出口货物报关单申请表》（见附件36），提供正式申报电子数据及下列资料：  　　（1）出口货物报关单（其他联次或通过口岸电子执法系统打印的报关单信息页面）；  　　（2）主管税务机关要求报送的其他资料。  　　2．申请开具补办出口收汇核销单证明的，应填报《补办出口收汇核销单证明申请表》（见附件37），提供正式申报电子数据及下列资料：  　　（1）出口货物报关单（出口退税专用或其他联次或通过口岸电子执法系统打印的报关单信息页面）；  　　（2）主管税务机关要求报送的其他资料。  　　（五）出口退税进货分批申报单  　　外贸企业购进货物需分批申报退（免）税的及生产企业购进非自产应税消费品需分批申报消费税退税的，出口企业应凭下列资料填报并向主管税务机关申请出具《出口退税进货分批申报单》（见附件38）：  　　 1．增值税专用发票（抵扣联）、消费税专用缴款书、已开具过的进货分批申报单；  　　2．增值税专用发票清单复印件；  　　3．主管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及正式申报电子数据。  　　（六）出口货物转内销证明  　　外贸企业发生原记入出口库存账的出口货物转内销或视同内销货物征税的，以及已申报退（免）税的出口货物发生退运并转内销的，外贸企业应于发生内销或视同内销货物的当月向主管税务机关申请开具出口货物转内销证明。申请开具出口货物转内销证明时，应填报《出口货物转内销证明申报表》（见附件39），提供正式申报电子数据及下列资料：  　　1．增值税专用发票（抵扣联）、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进货分批申报单、出口货物退运已补税（未退税）证明原件及复印件；  　　2．内销货物发票（记账联）原件及复印件；  　　3．主管税务机关要求报送的其他资料。  　　外贸企业应在取得出口货物转内销证明的下一个增值税纳税申报期内申报纳税时，以此作为进项税额的抵扣凭证使用。  　　（七）中标证明通知书  　　利用外国政府贷款或国际金融组织贷款建设的项目，招标机构须在招标完毕并待中标企业签订的供货合同生效后，向其所在地主管税务机关申请办理《中标证明通知书》。招标机构应向主管税务机关报送《中标证明通知书》及中标设备清单表（见附件40），并提供下列资料和信息：  　　１．国家评标委员会《评标结果通知》；  　　２．中标项目不退税货物清单（见附件41）；  　　３．中标企业所在地主管税务机关的名称、地址、邮政编码；  　　 4．贷款项目中，属于外国企业中标再分包给国内企业供应的机电产品，还应提供招标机构对分包合同出具的验证证明；  　　 5．贷款项目中属于联合体中标的，还应提供招标机构对联合体协议出具的验证证明；  　　 6．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  　　 （八）丢失有关证明的补办  出口企业或其他单位丢失出口退税有关证明的，应向原出具证明的税务机关填报《关于补办出口退税有关证明的申请》（附件42），提供正式申报电子数据。原出具证明的税务机关在核实确曾出具过相关证明后，重新出具有关证明，但需注明“补办”字样。  　　十一、其他规定  　　（一）出口货物劳务除输入特殊区域的水电气外，出口企业和其他单位不得开具增值税专用发票。  　　（二）增值税退税率有调整的，其执行时间：  　　1.属于向海关报关出口的货物，以出口货物报关单上注明的出口日期为准；属于非报关出口销售的货物，以出口发票或普通发票的开具时间为准。  　　2.保税区内出口企业或其他单位出口的货物以及经保税区出口的货物，以货物离境时海关出具的出境货物备案清单上注明的出口日期为准。  　　（三）需要认定为可按收购视同自产货物申报免抵退税的集团公司，集团公司总部必须将书面认定申请及成员企业的证明材料报送主管税务机关，并由集团公司总部所在地的地级以上（含本级）税务机关认定。  　　集团公司总部及其成员企业不在同一地区的，或不在同一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的,由集团公司总部所在地的省级国家税务局认定；总部及其成员不在同一个省的，总部所在地的省级国家税务局应将认定文件抄送成员企业所在地的省级国家税务局。  　　（四）境外单位、个人推迟支付货款或不能支付货款的出口货物劳务，及出口企业以差额结汇方式进行结汇的进料加工出口货物，凡外汇管理部门出具出口收汇核销单的（免予提供纸质出口收汇核销单的试点地区的税务机关收到外汇管理部门传输的收汇核销电子数据），出口企业和其他单位可按现行有关规定申报退（免）税。  　　（五）属于远期收汇且未超过在外汇管理部门远期收汇备案的预计收汇日期的出口货物劳务，提供远期收汇备案证明申请退（免）税的，出口企业和其他单位应在预计收汇日期起30天内向主管税务机关提供出口收汇核销单（出口退税联）。逾期未提供的，或免予提供纸质出口收汇核销单的试点地区的税务机关收到外汇管理部门传输的收汇核销电子数据的“核销日期”超过预计收汇日期起30天的，主管税务机关不再办理相关出口退（免）税，已办理出口退（免）税的，由税务机关按有关规定追回已退（免）税款。  　　（六）输入特殊区域的水电气，区内生产企业未在规定期限内申报退（免）税的，进项税额须转入成本。  　　（七）适用增值税免税政策的出口货物劳务，除特殊区域内的企业出口的特殊区域内的货物、出口企业或其他单位视同出口的货物劳务外，出口企业或其他单位如果未在规定的纳税申报期内按规定申报免税的，应视同内销货物和加工修理修配劳务征免增值税、消费税，属于内销免税的，除按规定补报免税外，还应接受主管税务机关按《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做出的处罚；属于内销征税的，应在免税申报期次月的增值税纳税申报期内申报缴纳增值税、消费税。  　　出口企业或其他单位对本年度的出口货物劳务，剔除已申报增值税退（免）税、免税，已按内销征收增值税、消费税，以及已开具代理出口证明的出口货物劳务后的余额，除内销免税货物按前款规定执行外，须在次年6月份的增值税纳税申报期内申报缴纳增值税、消费税。  　　（八）适用增值税免税政策的出口货物劳务，出口企业或其他单位如果放弃免税，实行按内销货物征税的，应向主管税务机关提出书面报告，一旦放弃免税，36个月内不得更改。  　　（九）除经国家税务总局批准销售给免税店的卷烟外，免税出口的卷烟须从指定口岸（见附件43）直接报关出口。  　　（十）出口企业和其他单位出口财税〔2012〕39号文件第九条第（二）项第6点所列的货物，出口企业和其他单位应按财税〔2012〕39号文件附件9所列原料对应海关税则号在出口货物劳务退税率文库中对应的退税率申报纳税或免税或退（免）税。  出口企业和其他单位如果未按上述规定申报纳税或免税或退（免）税的，一经主管税务机关发现，除执行本项规定外，还应接受主管税务机关按《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做出的处罚。  十二、适用增值税征税政策的出口货物劳务，出口企业或其他单位申报缴纳增值税，按内销货物缴纳增值税的统一规定执行。  　　十三、违章处理  　　（一）出口企业和其他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主管税务机关应按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第六十条规定予以处罚：  　　1．未按规定设置、使用和保管有关出口货物退（免）税账簿、凭证、资料的；  　　2．未按规定装订、存放和保管备案单证的。  　　（二）出口企业和其他单位拒绝税务机关检查或拒绝提供有关出口货物退（免）税账簿、凭证、资料的，税务机关应按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第七十条规定予以处罚。  　　（三）出口企业提供虚假备案单证的，主管税务机关应按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第七十条的规定处罚。  　　（四）从事进料加工业务的生产企业，未按规定期限办理进料加工登记、申报、核销手续的，主管税务机关在按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第六十二条有关规定进行处理后再办理相关手续。  　　（五）出口企业和其他单位有违反发票管理规定行为的，主管税务机关应按照《中华人民共和国发票管理办法》有关规定予以处罚。  　　（六）出口企业和其他单位以假报出口或者其他欺骗手段，骗取国家出口退税款，由主管税务机关追缴其骗取的退税款，并处骗取税款一倍以上五倍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对骗取国家出口退税款的，由省级以上（含本级）税务机关批准，按下列规定停止其出口退（免）税资格：  　　1．骗取国家出口退税款不满5万元的，可以停止为其办理出口退税半年以上一年以下。  　　2．骗取国家出口退税款5万元以上不满50万元的，可以停止为其办理出口退税一年以上一年半以下。  　　3．骗取国家出口退税款50万元以上不满250万元，或因骗取出口退税行为受过行政处罚、两年内又骗取国家出口退税款数额在30万元以上不满150万元的，停止为其办理出口退税一年半以上两年以下。  　　4．骗取国家出口退税款250万元以上，或因骗取出口退税行为受过行政处罚、两年内又骗取国家出口退税款数额在150万元以上的，停止为其办理出口退税两年以上三年以下。  5．停止办理出口退税的时间以省级以上（含本级）税务机关批准后作出的《税务行政处罚决定书》的决定之日为起始日。  　　十四、本办法第四、五、六、七条中关于退（免）税申报期限的规定，第九条第（二）项第三款的出口货物的免税申报期限的规定，以及第十条第（一）项中关于申请开具代理出口货物证明期限的规定，自2011年1月1日起开始执行。2011年的出口货物劳务，退（免）税申报期限、第九条第（二）项第三款的出口货物的免税申报期限、第十条第（一）项申请开具代理出口货物证明的期限，第十一条第（七）项第二款规定的期限延长3个月。  　　本办法其他规定自2012年7月1日开始执行。起始日期：属于向海关报关出口的货物劳务，以出口货物报关单上注明的出口日期为准；属于非报关出口销售的货物，以出口发票（外销发票）或普通发票的开具时间为准；属于保税区内出口企业或其他单位出口的货物以及经保税区出口的货物，以货物离境时海关出具的出境货物备案清单上注明的出口日期为准。  　　《废止文件目录》（见附件44）所列文件及条款同时废止。本办法未纳入的出口货物增值税、消费税其他管理规定，仍按原规定执行。  　　分送：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 |